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20조 제3항'을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부 동 산 중 개 수 수 료

종별	거 래 가 액	수 수 료 율	한 도 액
매 매 교 환	· 5백만원미만	0.9%	35,000원 이내
	·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0.7%	60,000원 이내
	· 1천만원미만	0.6%	150,000원 이내
	· 3천만원미만	0.5%	200,000원 이내
	· 5천만원미만	0.4%	300,000원 이내
	· 1억원미만	0.3%	500,000원 이내
	· 2억원미만	0.25%	800,000원 이내
	· 4억원미만	0.2%	1,200,000원 이내
	· 8억원이상	0.15%	
매 매 교 환 이 외 의 임 대 차 등	· 1백만원미만	0.8%	7,000원 이내
	· 1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0.7%	30,000원 이내
	· 5백만원미만	0.6%	50,000원 이내
	· 1천만원미만	0.5%	120,000원 이내
	· 3천만원미만	0.4%	150,000원 이내
	· 5천만원미만	0.3%	250,000원 이내
	· 1억원미만	0.25%	400,000원 이내
	· 2억원미만	0.2%	600,000원 이내
	· 4억원이상	0.15%	

- ※ 1.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2.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증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